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초본 교부 신청용]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지배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교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우편물 발송 확인서		
	우편물 발송기관	기관명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송달 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차 발송일	2차 발송일
	위와 같이 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 기관 (인)			

신청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열람·교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 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	---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우편물 발송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및 확인 기관의 직인은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기관의 직인은 전자 이미지 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